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네이버주식회사 제15기(2013.1.1~2013.12.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네이버 그린팩토리 2층 Connect Hall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 제15기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2) 의결사항 :

- 제1호 의안 : 제15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별첨1 참조]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별첨2 참조]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상헌 선임의 건(재선임)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황인준 선임의 건(재선임)
- 제4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상법 시행령 제31조 5항, 당사 정관 제25조 4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당사의 본사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에 비치하고,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금번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으며,
정기주주총회 관련 문의사항은 1588-383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네이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상 헌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현행	변경	비고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ver-corp.com)에 게재한다. (생략)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vercorp.com)에 게재한다. (생략)	-도메인 확보에 따른 홈페이지 URL 변경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자본시장법 개정 에 따른 변경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3.06.28>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의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이하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 에 따른 내용 적용 및 DR 발행 관련 규정 삭제

현행	변경	비고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단주 관련 내용 분리, 별도 항목으로 규정
제14조(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회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 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규정 폐지 반영

현 행	변 경	비 고
제 18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u>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u>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u>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제 18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u>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u>2.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u><이하 삭제></u>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에 준용
제 35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제 35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분할에 따른 조정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 사내이사 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비고
김상현 (1963.9.11)	-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 대학원 수료 - 하버드대 로스쿨 LL.M 석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주)LG 법무팀 부사장 - (現) 네이버(주) 대표이사	이사회	없음	-	사내이사
황인준 (1965.6.16)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뉴욕대학교 석사 - 우리금융지주(주) - 우리투자증권(주) IB 사업부 상무 - (現) 네이버(주) CFO	이사회	없음	-	사내이사